

1. 개정이유

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(’25.4.1. 공포, ’25.10.2. 시행)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(안 별표2 제2호가목1))

1)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(’25.4.1. 공포, ’25.10.2. 시행)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2) 아동·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(유치원, 학교 등)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

3)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·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1) 전단 중 “법 제9조제4항제6호”를 “법 제9조제4항제6호, 제6의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2.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. 흡연실의 설치 위치 1) 법 제9조제4항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,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·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.	2.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. 흡연실의 설치 위치 1) 법 제9조제4항제6호, 제6의2호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